

부여군의회 공고 제2026 - 15호

부여군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6년 8월 20일

부여군의회 의장 백 용 달



부여군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부여군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임시회의록 :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개 전에 임시로 군의회 누리집에 게재한 회의록

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- ④ 임시회의록이 게재된 후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회의록의 구분)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제11조(회의록의 배부와 공개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③ (생략)	제2조(회의록의 구분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임시회의록 :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개 전에 임시로 군의회 누리집에 게재한 회의록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제11조(회의록의 배부와 공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</u> ④ <u>임시회의록이 게재된 후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.</u>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